

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본문 중 “학년”을 “학년(초등학교의 경우 학년군)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본문 중 “인정을”을 “(공립·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 교육장을 거쳐) 인정을”로 하고, “다만, 공립·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.”을 “다만,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 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) 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의 학교급별, 학년별, 편성할 수 있는 과목의 시행일부터 해당 고시를 폐지하는 일까지로 한다.

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편찬·검정·인정·가격결정”을 “구분·편찬·검정·인정·가격결정”으로, “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교과용도서심의회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”를 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”로 한다.

제20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

지 아니하는 경우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) ①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교과용도서의 편찬·검정·인정·가격결정 및 발행에 관여하는 경우
2. 위원이 발행자와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
3. 최근 3년 이내에 발행자 업체에 근무한 경우

②발행자는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전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, 검정도서의 합격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합격결정) ① (생략) ②동일 <u>학년</u> 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. 다만,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(생략)	제10조(합격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 <u>학년(초등학교의 경우 학년군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인정도서의 신청) ① (생략) ② 삭제 ③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·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(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부	제14조(인정도서의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단축한 경우 그 기한)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<u>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공립·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.</u>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(공립·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 교육장을 거쳐) 인정을 ---. 다만,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 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. ④ (현행과 같음) 제17조의2(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) <u>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의 학교급별, 학년별, 편성할 수 있는 과목의 시행일부터 해당 고시를 폐지하는 일까지로 한다.</u>
제18조(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) 교과용도서의 <u>편찬·검정·인정·가격결정</u>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<u>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</u> 를 둔다. <u><신설></u>	제18조(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) ① ----- <u>구분·편찬·검정·인정·가격결정</u> ----- ----- <u>교과용도서심의회</u> -----. ② <u>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의 구체</u>

제19조(심의회회의 구성)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1. ~ 8. (생략) 제20조의2(위원의 해임 및 해촉)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<u>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</u> 제19조(심의회회의 구성) ----- -----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u> 1. ~ 8. (현행과 같음) 제20조의2(위원의 해임 및 해촉)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) ①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 1.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교과용도서의 편찬·검정·인정·가격결정 및 발행에 관여하는 경우	제39조(청문) (생략) <u><신설></u>	2. 위원이 발행자와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. 최근 3년 이내에 발행자 업체에 근무한 경우 ②발행자는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 제39조(청문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, 검정도서의 합격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-	---	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	
연 락 처	044-203-6474, 6475